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3(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) 법 제23조에서 "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말한다.

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3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7의2]

보상금 지급정지 금액 구분표(제26조의3 관련)

1. 재해부상군경: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보상금 중 다음 금액을 지급정지한다.

상이등급별	월 지급정지 금액 (천원)	상이등급별	월 지급정지 금액 (천원)
1급 1항	1,129	3급	805
1급 2항	1,129	4급	493
1급 3항	1,129	5급	215
2급	940	6급 1항	97

2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: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중 다음 금액을 지급정지한다.

구분	월 지급정지 금액 (천원)
가. 재해사망군경의 유족	
1) 배우자	229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446
3) 부모 또는 조부모	206
나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48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238
3) 부모 또는 조부모	29
다.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	
1) 배우자	6
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	197

비고: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으로서 2개 이상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받고 있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월 지급정지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3(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) 법 제23조에서 "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